

소규모합병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

㈜크라프트톤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기준일 : 2020년 10월 10일
2. 목 적 : 1)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위한 주주확정
2)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

2020년 9월 25일

주식회사 크라프트톤

대표이사 김창한

명의개서대리인

주식회사 국민은행